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##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의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』는  
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 
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안 제14조에

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신설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

-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보다 풍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